

# 학 칙

2002. 09. 01. 제정  
2013. 09. 01. 개정  
2016. 09. 01. 개정  
2017. 02. 20. 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학칙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한다)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, 학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교육목표)** 본교는 영어 지도 및 영어교재 개발의 이론 및 실제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석사과정” 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.
2. “전임교수” 라 함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말한다.

## 제2장 학교조직 및 학생정원

**제4조(설치과정)** ①본교에는 석사학위 과정을 둔다.

②본교에 학위과정으로 두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협동과정(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.)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(학과와 정원)** ①본교에는 영어지도학과와 영어교재개발학과를 둔다.

②본교에 설치하는 학과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.

**제6조(연구과정)** ①본교의 학위과정 외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학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.

②본교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.

③연구생으로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한다.

④기타 연구생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7조(학·연·산 협동과정)** 본교에는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학·연·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.

###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

**제8조(수업연한)** 본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 과정 2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9조(재학연한)** 재학연한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/작품심사에서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학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.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 제4장 학년 및 학기

**제10조(학년, 학기)** ①학년은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.

가을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

봄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

③다만,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.

### 제5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

**제11조(수업일수)**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(매 학기 15주 이상)이상으로 한다.

②천재, 지병 기타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.

**제12조(교원의 교수시간)** 교원(학교의 장을 제외한다)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13조(휴업)** ①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.

②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.

### 제6장 입학 및 재입학

**제14조(입학시기)** 학생의 입학 및 재입학은 매 학기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**제15조(입학전형회수)** 본교는 매년 1회 이상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.

**제16조(모집방법)** 신입생은 학과별로 모집한다.

**제17조(입학지원자격)** ①본교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사학위 소지자

2.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②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은 지원할 수 없다. 단,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는 교직원은 지원할 수 있다. 외국 국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외국인으로 본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제22조에 의거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**제18조(지원절차)** 본교 각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지원전공분야)** 지원자는 출신학부, 학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**제20조(입학전형위원회)** 대학원위원회는 입학고사의 관리, 시행을 위한 입학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.

**제21조(입학허가)** ①입학지원 절차는 모집시에 공고한다.

②신입생 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사정원칙에 의한다.

③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업료와 입학금 및 기타의 납부금(이하 “등록금”이라 한다)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정원의 입학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학칙 제17조에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추고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

2.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학생

3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
**제23조(전과)** ①전과는 1학년 1학기말에 허가하며, 전출 및 전입 인원은 해당학과 인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전과자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관리규정에 따른다.

- 제24조(재입학)**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원학년의 원학기 이하에 한하여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매학기초 소정기일 내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②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- ③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. 다만, 제적생인 경우에는 제적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.
- ④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줄 수 있다.

**제25조(입학의 취소)** 본교에 입학이 허가된 자로서 학칙 제17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

## 제7장 등 록

**제26조(등록)**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등록절차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한 후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.

**제27조(등록금 납부의무)** 본교 학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등록금의 반환)**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.

**제29조(복학자의 납입금)**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학기에 복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.

**제30조(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)**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
**제31조(실험실습비 등)** 실험, 실습, 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징수할 수 있다.

## 제8장 휴학, 자퇴 및 제적

**제32조(자퇴)**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3조(휴학 및 제적)** ①학생이 부득이한 사유(자녀양육(만 8세 이하), 임신, 출산, 질병 및 군복무 등)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주수의 4분의 2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,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②당해학기 수업주수 4분의 2 이후에 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휴학기간은 석사과정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적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4학기까지 가능하다.

④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
⑤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.

⑥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제적된다.

**제34조(복학 및 복적)** ①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등록 기간내에 허가할 수 있다.

②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년 이내에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복적할 수 있으며, 복적은 1회에 한한다.

**제35조(이중학적의 금지)** 본교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.

## 제9장 수료 및 졸업

**제36조(수료 및 졸업)** ①본교 학위과정의 수료 및 졸업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.

②수료라 함은 수업년한이 경과하고 학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한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,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.

③본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**제37조(졸업 취소)** 졸업생으로 학사관리규정의 학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.

### 제9장의 2 IGSE 영어능력시험

**제37조의 2(IGSE 영어능력시험)** ①입학 시 IGSE 영어능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제2학기에 진급하기 위해서 IGSE 영어능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.

②IGSE 영어능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학 처분한다.

③IGSE 영어능력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10장 교육과정, 교과목 이수 및 성적관리

**제38조(교과목)** 교과목은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, 전공과목중 필수와 선택의 구분은 교육과정에 따른다.

**제39조(학점)** ①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. 다만, 제11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② ‘논문 연구’, ‘작품 개발’, ‘커뮤니케이션’ 및 ‘영어교육 모듈 개발’ 교과목에 대한 이수단위, 이수기간, 이수방법 등은 교육과정에 따로 정한다.

**제40조(교육과정의 운영)** ①본교의 교육과정은 2년에 한번씩 개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각 학과는 교육과정의 개편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본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**제41조(과정이수 학점)** ①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67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②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** ①학기당 취득학점은 20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.3이상일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기당 취득학점에 추가로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.

**제43조(타 학과 교과목의 이수)** 타 학과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.

**제44조(수강신청)** 학생은 지정된 기일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45조(수강과목의 변경 및 취소)** 수강과목의 변경 및 취소는 학사관리규정에 따른다.

**제46조(출석)** 각 교과목 중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**제47조(시험)**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하거나 과제를 부가할 수 있다. 다만, 중간시험을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
**제48조(성적등급 및 평가)** ①학업성적은 시험성적, 과제평가, 출석상황,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,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등급	평점	백분율
A+	4.3	97.00-100
A0	4.0	93.00 -96.99
A-	3.7	90.00-92.99
B+	3.3	87.00-89.99
B0	3.0	83.00-86.99
B-	2.7	80.00-82.99
C+	2.3	77.00-79.99
C0	2.0	73.00-76.99
C-	1.7	70.00-72.99
D+	1.3	67.00-69.99
D0	1.0	63.00-66.99
D-	0.6	60-62.99
F	0	60 미만

②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급락만 구분하여 급제는 ‘S’ 로, 낙제는 ‘U’ 로 표시하며,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.

③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‘I’ (미완)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.

④수강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‘F’ 가 된다.

**제49조(추가시험)**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추가시험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성적이 확정될 때까지는 “I” 로 처리된다.

**제50조(취득학점 인정)** ①교과목별 성적이 ‘D-’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,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.0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

②일부 교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할 경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.

**제51조(학사경고)** 한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3.0에 미달되거나 6학점 이상이 ‘F’ 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.

## 제11장 학위논문·작품

**제 52 조(학위논문·작품)** 학위논문·작품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 및 석사학위논문·작품제출에관한내규에 따른다.

## 제12장 학위수여

**제53조(학위수여요건)** 학위수여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4학기 동안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6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
2. 각 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.0 이상이고
3. 석사학위 논문·작품과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논문·작품 심사에 합격한 자

**제54조(학위종별)** 본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다.

**제55조(심의)**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취득자격을 갖춘 자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심의한다.

**제56조(학위수여)** 총장은 학위수여 심의에 통과된 자에게 해당학위를 수여한다.

**제57조(학위기 수여)** 본교의 학위수여는 총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.

**제58조(학위수여의 취소)** 본교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## 제13장 포상 및 징계

**제59조(포상)**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에 따른다.

**제60조(징계)** ①총장은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.

②징계는 근신, 정학 및 퇴학으로 한다.

③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



한다.

④징계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관리규정에 따른다.

**제61조(퇴학)** ①제51조의 학사경고를 통산 2회 받은 자, IGSE 영어능력시험 응시 대상자 중에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자는 퇴학 처분한다.

②퇴학한 자는 본교에 재입학할 수 없다.

## 제14장 장학금

**제62조(장학금)** ①학생에게는 2년(4학기)간 수업료를 지원하며, 이를 인정장학금이라 한다.

② 학내 각종 업무에 종사하는 학생에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장학금 관련 심의는 대학원위원회가 맡는다.

④ 대학원위원회는 장학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수령 인원 배정
2. 장학금 지급
3. 장학생 지도
4. 기타 장학금 관련 주요 사항

## 제15장 직제

**제63조(직제)** 본교의 직제는 직제규정에 따른다.

## 제16장 자체평가

**제64조(자체평가)**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(평가)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65조~제67조(삭제)**

## 제17장 대학원위원회

**제68조(대학원위원회)** 본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를 둔다.

**제69조(위원회 구성)** ①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70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·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·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4.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제71조(위원회 소집)** 위원회는 총장 및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## 제17장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

**제71조의 2(등록금심의위원회)** 고등교육법 제11조2항에 의거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
**제71조의 3(위원회 구성)** ①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교직원 3명(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), 학생 2명, 동문 1명, 관련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71조의 4(위원회 기능 및 소집)** ①위원회의 기능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.

②위원회는 총장 및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## 제18장 기획운영위원회

**제72조(기획운영위원회)** 본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기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73조(위원회 구성)** ①기획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·학과장·도서관장·총무과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단, 재단 관계자 1인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.

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
④위원회는 일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74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학과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
2. 교육 및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3. 시설계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
4. 예산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5. 그 외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
6. 기타 총장이 대학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·의결을 요구하는 사항

**제75조(위원회 소집 및 의결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19장 대학인사위원회

**제76조(대학인사위원회)** 본교에는 전임교수의 임명동의 및 기타 대학교원의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인사위원회를 둔다.

**제77조(위원회 구성)** ①대학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수 또는 교외 영어교육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.

**제78조(위원회 기능)** 대학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임교수의 임명 제청, 전보 제청 또는 임명의 동의에 관한 사항
2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
3. 학생의 학업 및 생활에 대한 지도 능력과 실적
4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9조(위원회 소집 및 의결)** ①대학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대학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20장 학생활동

**제80조(학생회 등)** ①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위 단체는 학생자치기구이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
**제81조(학생 학업 및 생활지도)** 학업 및 학생생활의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상담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

**제82조(학생의 의무)** ①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수업,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.

②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83조(간행물)** 학생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은 학사관리규정에 따른다.

### 제20장의 1 장애학생 지원

**제83조의1(특별지원위원회)** ①본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결정하기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, 운영한다.

1.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
2.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
3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사항

②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83조의2(장애학생지원센터)** ①본교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·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장애학생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제21장 부속·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

**제84조(삭제)**

**제85조(부속기관)** ①본교에 도서관, 출판부, 국제교사교육원, 한국원격교사교육원, 영어교육연구소, EFL 평가원을 둔다.

②전항의 각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은 부속기관 규정에서 정한다.

**제86조(부설기관)** ①본교에 EFL 연구센터 등의 부설기관을 둔다.

②전항의 각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86조의2(산학협력단)**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거 본교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‘산학협력단’ 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전항의 기관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**제86조의3(평생교육원)** ①본교에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(이하 “평생교육원” 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전항의 기관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규정 및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## 제22장 보칙

**제87조(시행세칙)** 이 학칙의 시행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사관리 규정에 따른다.

**제88조(학칙개정절차)** ①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 또는 대학원위원회가 발의하고, 5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총장이 학칙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, 공포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학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0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11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본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<별표 1>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

학 과 ( 전 공 )	석사학위과정
영어지도학과 및 영어교재개발학과	50

### <별표 2> 학위종별

학 위 명 학과(전공)명	석사학위과정
영어지도학과	영어학석사 (MA in TESOL)
영어교재개발학과	영어학석사 (MA in ELT Materials Development)

(별지 제1호 서식)

국 제 어 대 학

## 학 위 기

성 명 :  
생년월일:   년   월   일생

위 사람은 본교 ○○학과 석사학위 전과정을 이  
수하였기에 영어학 석사( *각별 영문 학위평표*  
기) 학위를 수여함.

학위번호 : 국제영어대(석) 200 -

200   년   월   일

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총 장